

의안번호	2212639
의 퇴 인	조경태 의원
회 답 일	2025. 9. 25.
추 계 번호	25B476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0조의2(신고 포상금 지급)	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0조의2(신고포상금 지급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신고포상금 지급(안 제90조의2)

-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¹⁾하고 누구든지 학대를 받는 동물을 발견

1) 제10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목을 매다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2.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3.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
4. 그 밖에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

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도구·약물 등 물리적·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²⁾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 10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,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향후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-
2.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. 다만,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3. 도박·광고·오락·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. 다만,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4.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
 - 가. 사람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나.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폭서·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다.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 - 라. 동물의 사육·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

(이하 생략)

- 2) 제39조(신고 등)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
1. 제10조에서 금지한 학대를 받는 동물
2. 유실·유기동물

(이하 생략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